



제429회 국회 (정기회)
제2차 외교통일위원회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등 법률적 지원 〉

■ 박충권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8457)

2025. 9.

외 교 통 일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사 우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박충권의원 등 18인
2. 발 의 일 : 2025. 2. 26.
3. 회 부 일 : 2025. 2. 27.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북한에서 법률교육을 충분히 받지 못하여 탈북 후 대한민국에 정착하는 데 법률 인식의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음.

통일부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북한이탈주민의 법률교육 및 상담을 위한 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나, 이러한 제도에 대한 명시적 법률 규정이 없어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국가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법률적 지원을 통한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사회 정착을 돕고자 함(안 제21조의3 신설).

Ⅲ. 검토의견

- 개정안은 국가가 보호대상자에 대한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임(안 제21조의 3 신설).

현행	개정안
<신설>	제21조의3(보호대상자에 대한 법률상담등) ① 국가는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법률상담과 소송대리(訴訟代理) 등의 지원(이하 “법률상담등”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통일부장관은 「법률구조법」 제8조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법」에 따른 대한변호사협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의 기관에 제1항에 따른 법률상담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법률상담등에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법무부장관 및 대한변호사협회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법률상담등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부담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법률상담등의 요건과 내용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북한이탈주민법”) 제8조¹⁾는 보호대상자로 결정된 북한이탈주민에 대하여는 정착

1) 제8조(보호 결정 등) ① 통일부장관은 제7조제4항에 따른 통보를 받으면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국가안전보장에 현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국가정보원장이 그 보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통일부장관과 보호신청자에게 통보하거나 알

지원시설에서 보호(법 제11조), 사회적응교육(법 제15조), 직업훈련 및 취업보호(법 제16조 및 제17조), 주거지원(법 제20조), 정착지원금 지급(법 제21조), 교육지원(법 제24조) 등의 정착과 자립에 필요한 지원을 실시하고 있음.

- 또한, 통일부는 거주지에 정착한 북한이탈주민의 법률교육 및 상담을 위하여 법무부·대한변호사협회와 공동으로 “북한이탈주민 법률지원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014년부터 지역적응센터(하나센터) 위촉변호사 제도를 실시하고 있음.²⁾

하나센터 위촉변호사는 해당 센터를 월 1~2회 주기적으로 방문하여 북한이탈주민을 위해 생활법률 교육 및 법률상담, 소송연계 등을 지원하고 있음.

- 한편, 법무부는 2021년 7월 대한변호사협회, 남북하나재단과 ‘북한이탈주민 지원변호인제도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수도권 11개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에서 11명의 변호사와 시범사업을 진행한 후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1대 1 맞춤형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북한이탈주민 지원 변호인 제도’를 정식 도입하였음.³⁾

려야 한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보호 여부를 결정한 통일부장관은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거쳐 재외공관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통보를 받은 재외공관장등은 이를 보호신청자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2) 2025년 8월말 현재 총 51명의 위촉 변호사가 25개 지역적응센터에 배치되어 활동 중이며, 2024년(1월~12월) 동안 법률상담 총 613회(719명), 법률교육 총 40회(200명)를 실시한 바 있음.

동 제도는 현재 1차 상담 이후 가족 및 관계자 상담 등 추가적인 2차 상담을 통해 전문적인 상담을 지원하고, 문제 해결방안을 논의한 후 가사·민사·형사·복지 영역에서 법률 및 행정조치를 지원하고 있음.

또한, 고비용이 예상되는 소송(인지액, 송달료, 변호사 선임비용)의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소송구조제도 활용토록 안내하고 있음.

□ 통일부는 하나센터 및 하나재단을 통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법률 교육 및 법률상담 등 법률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나, 대한변호사협회 또는 서울지방변호사회로부터 위촉 변호사를 지원받는 형태로서 법률지원에 관한 명시적인 법령상 근거 규정이 없어 일정한 한계가 있다는 입장임.

□ 이에 개정안은 북한이탈주민이 국내 정착 과정에서 겪는 법적 문제에 대해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상담, 소송대리 등의 지원을 명시하고, 통일부장관이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협회 등 관련 전문기관에 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권한과 절차를 규정하며, 관련 비용을 국가가 부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북한이탈주민들은 입국 초기부터 신분확인, 가족관계 정리, 탈북 과정 관련 진술, 취업·주택 임대차·금전 대차 등 다양한 분야에서 법

3) 법무부는 이외에도 법률상담터를 통해 ‘찾아가는 북한이탈주민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축적된 법률상담 사례를 유형화한 법률상담사례집을 발간하고(25년 1월), 통일부는 협력 기관이 북한이탈주민 법률지원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제반사항에 대하여 협조해 나가고 있음.

률문제에 직면하지만, 현행법에는 법률상담이나 구조에 대한 명시적 지원 조항이 없어 대부분 공공기관의 개별적 연계 또는 민간의 도움에 의존하는 실정인바,

개정안에 따라 법률적 지원이 명시된다면 법률적 취약계층인 북한 이탈주민에게 실질적인 권리구제 기회를 보장하고, 통일부 중심의 법률복지 전달 체계 강화 및 기관간 유기적 연계 기반을 마련하며,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초기 및 사회통합 과정에서의 분쟁 예방 및 대응 역량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법률상담지원 실적 >4)

(단위 : 건)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남북하나재단	454	-	-	147	157	149
전국 하나센터	404	1,142	1,599	1,353	2,089	2,442

□ 다만, 개정안은 법률적 지원의 대상을 “보호대상자”로 규정하여 북한 이탈주민 중 “보호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제외하였는데, 보호대상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에 포함시켜 법률적 지원을 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사회 정착을 돕고자 하는 것이 동 개정안의 제안이유임을 고려할 때, 대상자를

4)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남북하나재단) 및 전국 25개 지역적응센터(하나센터)가 실시

* 법률 관련 단순 문의, 변호사 대면·유선 상담 및 법률 상담 관련 하나센터의 사전·사후 모니터링 등을 모두 포함한 실적

* 남북하나재단, 코로나19 시기(‘20.1.~’22.3) 법률 상담 중단, ‘22.4월부터 재개

“북한이탈주민”으로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
됨.

□ 그리고, 개정안은 법률상담에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법무부
장관 및 대한변호사협회장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고, 법률상담등
의 요건과 내용, 비용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는데,
법률상담의 요건과 내용은 동 제도의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므로,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봄.

□ 참고로, 개정안의 내용에 대하여 통일부는 법률지원을 위한 근거
마련을 통해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돕고자 하는 입
법 취지에 공감하고, 법률구조 지원대상을 비보호 대상자도 포함하
도록 ‘보호대상자’를 ‘북한이탈주민’으로 변경을 요청하는 의견이고,
기획재정부는 「법률구조법」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이미 하고 있
는 바, 개정 실익이 적고 사회적배려대상자 관련 유사 입법례(국가
유공자법, 장애인복지법, 다문화가족지원법)에서도 경비지원 특례
규정은 부재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 한편, 취약계층에 대한 법률상담 등의 법률적 지원을 명시한 입법
례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본군위안
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등
이 있음.

개별 법률들이 규정하고 있는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등의 지원 주체는 “국가”이고, 소관부처의 장관 등은 직접적인 법률구조업무(법률상담 및 소송대리 등)을 실시하는 기관인 법률구조공단 등에 법률상담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법률구조공단 등에 연계해주는 역할을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취약계층 법률상담 등 입법례 〉

법률명	조문
아동복지법	제29조의6(아동학대에 대한 법률상담 등) ① 국가는 피해아동을 위한 법률상담과 소송대리(訴訟代理) 등의 지원(이하 이 조에서 "법률상담등"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보장원의 장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법률구조법」 제8조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의 기관에 법률상담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법률상담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부담할 수 있다. 다만, 법률상담등을 받는 자가 다른 법령에 의하여 법률상담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④ 법률상담등의 요건과 내용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피해자에 대한 법률상담등) ① 국가는 피해자에 대하여 법률상담과 소송대리(訴訟代理) 등의 지원(이하 "법률상담등"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법률구조법」 제8조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의 기관에 제1항에 따른 법률상담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법률상담등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부담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법률상담등의 요건과 내용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법률상담 등) ① 국가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게 명예훼손 및 손해배상 등에 관하여 법률상담과 소송대리(訴訟代理) 등의 지원(이하 "법률상담등"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법률구조법」 제8조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의 기관에 법률상담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법률상담등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부담할 수 있다. ④ 법률상담등의 요건과 내용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문 의 처
02)6788-5267